

##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관리 규정

제정 2013. 02. 28    개정 2015. 04. 07  
 개정 2019. 02. 11    개정 2019. 08. 26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률”이라 한다) 제6조에 의거 경동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, 사고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”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실험실, 실습실, 시험실, 연구재료 저장실과 그 밖에 연구 장비 및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2. “연구 활동 종사자”라 함은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에 종사하는 교직원, 학생 및 기타 관련자 등을 말한다.

제3조 (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안전관리위원회) ①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안전관리위원회’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을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5. 4. 7, 개정 2019. 8. 26.)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계획의 수립
2. 「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관리규정」 및 관련 지침의 제·개정
3.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
4.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 (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)

- ① ‘안전관리총괄책임자’는 총장이 되며 대학 내의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.
- ②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‘안전관리 책임자’는 해당 학부 (과)의 장으로 하며, 학부 (과)내의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학부 (과)에 소속되지 않는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‘안전관리 책임자’는 ‘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안전관리위원회’ 위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- ③ ‘안전관리 책임자’ 는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‘관리책임교수’ 를 선임한다.
- ④ ‘관리책임교수’는 정.부 2인을 둔다. 정은 해당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담당 (지도) 교수가 되며, 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‘관리책임교수’ 정이 임명 한다.
- ⑤ 안전관리에 관계된 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⑥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설관리팀 (이하 “안전관리 부서”라 한다) 에서 담당한다.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) ① ‘관리책임교수’는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일상 및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‘관리책임교수’는 점검결과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사용을 제한하고, 이를 ‘안전관리책임자’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‘안전관리부서’는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계획에 따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
④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
⑤ ‘안전관리책임자’는 이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, 게시하여야 한다.

⑥ ‘안전관리책임자’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연구 활동 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[별표1]에 따라 적절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2. 11)

제6조 (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등) 안전점검의 종류, 실시 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상점검 :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 ‘관리책임교수’가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별 점검수칙에 따라 매일 점검하고 기록한다.

2. 정기점검 : ‘안전관리책임자’는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1년 1회 이상 점검한다.

3. 정밀안전진단 :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가. 최근 3년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

나.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

다. 독성가스 및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

제7조 (교육 등) ① ‘안전관리책임’ 는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1. 관리책임교수

2.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

3.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

4. 이공계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자

③ 본 규정에 적용받는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 2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 (보험가입 및 건강검진) ①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,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조 (안전관리비)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‘안전관리비’로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

2.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
3. 연구 활동 종사자에 건강검진 비
4.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에 관련된 비용
5. 보호 장비에 관련된 비용
6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7. 그 밖에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비

②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~2%를 ‘안전관리 예산’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2. 11)

제10조 (안전관리 기록의 유지) ①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.

② 각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은 매학기 종료 후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‘안전관리부서’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각 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은 상시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6개월간 비치 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)

① 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.

1.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
2. 인근직원 및 학생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
3. 진압불가 시 해당 실험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

② 화학물질 전도 등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

1.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및 응급조치
2. 현장에 즉각적인 유해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도된 화학물질을 제거
3. 화학물질 제거 시에는 주위의 모든 발화원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조치한다.

제12조 (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수립)

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.

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 책임자 및 ‘안전관리부서’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.

③ ‘안전관리부서’는 사고보고서를 ‘안전관리총괄책임자’에게 보고한다.

④ ‘안전관리부서’와 재해발생부서는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.

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한다.

⑥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킨다.

제13조 (연구실(실험 및 실습실) 사용제한 등) ① ‘안전관리총괄책임자’는 안전점검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 활동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 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.

②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

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‘안전관리총괄책임자’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‘안전관리총괄책임자’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.

제14조 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「시행령」, 「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신설 2019. 02. 11)

##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

<b>〈금지표지〉</b>	 <b>출입금지</b> DO NOT ENTER	 <b>관계자외출입금지</b> No entry unless authorized	<b>〈지시표지〉</b>	 <b>보안경착용</b> Wear eye protection
	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			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
 <b>안전장갑착용</b> Wear protective gloves	 <b>안전복착용</b> Wear protective clothes	<b>〈경고표지〉</b>	 <b>인화성물질주의</b> Caution - Flammable	 <b>산화성물질</b> Caution - Oxidizing agent
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	방열복 및 방한복등의 안전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		휘발유나 그 저장소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	기열·압축하거나 강산·알카리등이 첨가됨으로써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장소
 <b>폭발물</b> Caution - Explosive	 <b>독극물</b> Caution - Toxic	 <b>부식성물질</b> Caution - Corrosive	 <b>방사성물질</b> Caution - Radioactive	 <b>유해물질</b> Caution - Harmful substance
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	독극물이 있는 장소	신체나 물체에 떨어짐으로써 그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	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	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체가 있는 장소
 <b>위험장소</b> Caution - Risk of danger	 <b>고압가스주의</b> Caution - High pressure gas	※ 기타 표지는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[별표2] 및 [별표3] 준용		
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 물체	고압가스 보관 장소			